

2019년도 제4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

- 회의일시 : 2019. 1. 15.(화) 16:00~16:30
- 장 소 : 대학본부 3층 307호
- 참석위원 : 6명
 - 교원위원(3명) : 교학부총장, 학생·취업처장, 기획예산처장
 - 학생위원(3명) : 부총학생회장, 사회과학대학생회장, 동아리연합회장
- 배 석 : 3명 (기획예산과 담당자 1명, 교무과 담당자 2명)
- 심의안건 : 인천대학교 학사학위취득 유예 등록금(안)

- 심의결과
 - (수정가결) 인천대학교 학사학위취득 유예 등록금 : 15만원

□ 회의내용

▶직원

성원 보고(재적위원 총 7명 중 참석위원 6명, 불참위원 1명)

▶교학부총장

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에 의거 2019년도 제4차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.

지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'학사학위취득유예 등록금(안)'을 심의 유보하기로 해서 오늘 다시 개최했습니다.

그 때 학생 측에서 학생회 총운영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모으기로 해서 보류 했습니다. 학생위원들이 총운영위원회에서의 의견과 결정한 등록금(안)을 얘기해주세요.

▶부총학생회장

알아보니 교육부에서 법을 개정하면서 안내한 운영 요령이 있는데, "학교 시설 이용 및 학적 보유 등에 따른 직간접적 혜택이 수반되는 비용은 부과가 가능하다. 이 경우 각 대학별 학교 규칙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금 대비 적정 비율을 적용하되"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등록금(안)이 %로 적용되어 제시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

저번 회의 때 %로 적용하면 계열별 등록금 차등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정액제로 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, 이러한 부분을 각 단과대학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제도에 맞는 합리적 금액이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를 얻었습니다.

그래서 저희가 등록금으로 제시하는 금액은 학기당 15만원입니다.

참고한 사례는 현재 수료생이 도서관 열람실 사용하는데 15만원을 내야한다고 합니다. 그 금액을 참고해서 유예제도 등록금에도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.

▶기획예산처장

예. 그렇게 하시죠.

▶교학부총장

좋습니다. 원안은 등록금의 7%로 되어있었는데 정액제로 해서 15만원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.

▶부총학생회장

그리고 혹시 학사학위취득유예 등록금도 내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할 경우 논의가 가능한가요?

▶기획예산처장

예. 여기서 심의 된 것은 내년에도 또 논의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.

▶교학부총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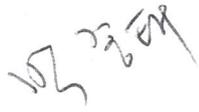
그럼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'학사학위취득유예 등록금(안)'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.

이상으로 2019년도 제4차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.

2019. 1. 15.

위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.

위 원 박 종 태



위 원 최 병 조



위 원 허 진



위 원 최 동 혁

최동혁

위 원 이 영 현

이영현

위 원 고 경 남

고경남

위 원 허 인 수